

공 보

제613호 2017. 10. 11.(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121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9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17-122호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고시 5

거창군 고시 제2017-123호 도로명주소 고시 7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1049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

거창군 공고 제2017-1053호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16

거창군 공고 제2017-1054호 공시송달공고 20

거창군 공고 제2017-1056호 공시송달공고 21

거창군 공고 제2017-1057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2-10호선 외 6개노선)결정(변경)
열람 공고 22

거창군 공고 제2017-1059호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계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
 거창군 공고 제2017-1060호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7
 거창군 공고 제2017-1064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45

회 관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 고시 제2017-121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9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78-103호(1978. 03. 20)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9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7. 09. 29.

거창군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97호선)	거창	중앙	소로	2	97	100	8.0	835	거창읍 가지리 401-7	거창읍 가지리 1698-5	경고 1978-103호 (1978.03.20)	당초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97호선)	거창	중앙	소로	2	97	100	8.0	880	거창읍 가지리 401-7	거창읍 가지리 1698-5	경고 1978-103호 (1978.03.20)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당초 준공 예정일 : 2017. 6. 30
- 변경 준공 예정일 : 2017. 10. 30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5,593	835					당 초
합계				4,378	880					변 경
1	거창읍 가지리	401-7	도	264	62		거 창 군			당초
2	"	401-1	전	182	82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41, 102동 603호(신흥아파트)	박 * 숙			당초
	"	401-9	도	87	87		거창군			변경
3	"	1698-1	도	127	29		국(국토교통 부)			당초
	"	1698-12	도	30	30		국(국토교통 부)			변경
4	"	463-6	전	29	11		거 창 군			당초
	"	463-8	도	12	12		거 창 군			변경
5	"	463-5	전	83	75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41, 102동 603호(신흥아파트)	박 * 숙			당초
	"	463-8	도	77	77		거 창 군			변경
6	"	209-5	전	415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 807호 (재송동,아이에스타워)	주식회사 삼*			당초
	"	209-5	도	415	0					변경
7	"	209-2	전	832	273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38-11	이 * 희			당초
	"	209-7	도	287	287		거 창 군			변경
8	"	211-1	과	77	55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41, 102동 603호(신흥아파트)	박 * 숙			당초
	"	211-1	도	77	77		거 창 군			변경
9	"	210	묘	541	149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9길 47	임 * 기			당초
	"	210-3	도	152	152		거 창 군			변경
10	"	1698-11	도	43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 807호 (재송동,아이에스타워)	주식회사 삼*			당초
	"	1698-11	도	43	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 807호 (재송동,아이에스타워)	주식회사 삼*			변경
11	"	218-2	과	67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 807호 (재송동,아이에스타워)	주식회사 삼*			당초
	"	218-4	과	1	1		거 창 군			변경
12	"	210-1	도	104	15		거 창 군			당초
13	"	1698-5	도	850	43		국(국토교통 부)			당초
14	"	215-5	도	1979	37		거 창 군			당초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83-1, 84-1 필지에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9. 29.

거창군수

1. 사업명 : 관광농원 조성사업

2. 사업자

○ 대표자 : 노 * 욱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35번길 **번지

3. 관광농원 승인현황

○ 명칭 : (주)양지생태촌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83-1, 84-1

○ 사업규모 : 27,300m²(변동없음)

○ 사업시행자 : (주)양지생태촌

○ 사업기간 : 2015. 08. 20. ~ 2017. 10. 31.

○ 변경승인일자 : 2017. 9. 26.

○ 사업개요

- 영농체험시설 면적 : 6,079m² ⇒ 6,116m²
- 지역특산물판매설 : 93.52m² ⇒ 0m²
- 숙박시설 : 2004.61m² ⇒ 1,237.89m²
- 음식제공시설 : 398.82m² ⇒ 105.32m²
- 기타시설 : 69.16m² ⇒ 618.52m²
 - 사 업 비 : 3,800,000천원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0. 11.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51 외 3건(부여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297-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51	2009-07-02	2017-10-11	행정구역명(거창+함양군) 활용	
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803-8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둔기길 40-6	2009-04-01	2017-10-11	신라와 백제가 싸울 때 군사가 진을 쳤던 곳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218-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산길 68-47	2009-04-01	2017-10-11	중산마을로 가는 길임이 반영된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343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하곡2길 126-7	2009-04-01	2017-10-11	하곡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주요 사항을 투명하게 심의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28. ~ 2017. 10. 17.(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보건소(의약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50142)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거창군보건소(의약담당)

○ 전화 : 055-940-8332, 팩스 : 055-940-8309, 이메일: yskim6866@korea.kr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연월일	2017. 9. .
제 출 자	보건소장

1. 개정이유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주요 사항을 투명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군 의원을 추가 위촉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병원 운영위원회) 제3항 제3호를 신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군수의 추천을 받아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인
2.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인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예고기간 : 2017. 9. 28 ~ 2017. 10. 17.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분석의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6인 이내”를 “7인 이내”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4조(병원 운영위원회)</p> <p>①~② (생략)</p> <p>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6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p>1. 군수의 추천을 받아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인</p> <p>2.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인</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4조(병원 운영위원회)</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7인</u> <u>이내</u>----- ----- ----- ----- 1. ----- ----- 2. ----- <u>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인</u></p>	<p>거창군립노인 요양병원 운영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주요 사항을 투명하게 심의하기 위함.</p>			

관계법규

□ 노인복지법에 관한 법률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2011.6.7.>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4.11., 2008.2.29., 2010.1.18., 2011.6.7.>

□ 의료법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일자	2017. 9. .
제 출 자	안전총괄과장

1. 제안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설·제빙 목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다.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까지 제설·제빙 책임 범위 확대
- 라.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설·제빙 작업시기 구체화 및 완화
- 마.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작업 중지와 안전조치에 관한사항 추가
- 바. 제설·제빙 도구 비치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도구비치의 구체적인 시기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해당 없음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

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 (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

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1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부과 및 독촉 고지서,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
- 공고기간 : 2017. 10. 12. ~ 2017. 10. 26.(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055-940-3293)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기간 위반자 중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행정처분전 자진 납부 시 부과금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후 납부 지연 시 가산금 최고 77%부과(가산금 5%, 증가산금 매월 1.2%)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조치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거 창 군 수

붙임: 사전안내문 등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1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부과 및 독촉 고지서,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
- 공고기간 : 2017. 10. 12. ~ 2017. 10. 26.(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055-940-3293)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기간 위반자 중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행정처분전 자진 납부 시 부과금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후 납부 지연 시 가산금 최고 77%부과(가산금 5%, 증가산금 매월 1.2%)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조치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거 창 군 수

붙임: 과태료 등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거창군 공고 2017-1057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2-10호선 외 6개노선) 결정(변경) 열람 공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1976-194(1976. 12. 07.)호로 결정된 「군계획도로 (중로 2-10호선)」 외 6개 노선에 대한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9. 29.

거 창 군 수

1.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2.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거창군 도시건축과
3. 의견 제출방법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670-870/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도시건축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관리계획(교통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거창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0	15	보조간선 도로	940	중1-10	중2-14	일반 도로	셋별 중교	건고194호 (’76.12.7)	
변경	중로	2	10	15	보조간선 도로	1,065	중1-10	중2-14	일반 도로	셋별 중교	-	
기정	중로	2	16	15	보조간선 도로	470	중1-16	중2-10	일반 도로	동동 공원	경고465호 (’92.12.24)	
변경	중로	2	16	15	보조간선 도로	438	중1-16	중2-10	일반 도로	동동 공원	-	
기정	소로	2	84	8	국 지 도로	481	중1-10	중2-10	일반 도로	-	경고103호 (’78.3.20)	
변경	소로	2	84	8	국 지 도로	511	중1-10	중2-10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85	8	국 지 도로	378	중2-10	소2-93	일반 도로	-	경고103호 (’78.3.20)	
변경	소로	2	85	8	국 지 도로	449	중2-10	소2-9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84	8	국 지 도로	220	소1-1	소3-98	일반 도로	-	경고126호 (’16.12.15)	
변경	소로	2	284	8	국 지 도로	216	소1-1	소3-98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98	6	국 지 도로	78	소2-28 4	중2-10	일반 도로	-	거고60호 (’01.12.31)	
변경	소로	2	288	8	국 지 도로	78	소2-28 4	중2-10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49	6	국 지 도로	180	소3-12 1	소3-12 1	일반 도로	-	경고126호 (’16.12.15)	
변경	소로	3	249	6	국 지 도로	176	소3-12 1	소3-12 1	일반 도로	-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10	중로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형변경 -폭원:15m -연장:940m→1,06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교량 설치를 위한 경남도 협의 결과 반영 도로선형 변경과 도로 개설 공사에 따라 지장물 저축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도로 선형을 유지하고자 기본설계를 반영하여 도로 선형을 변경함
중로2-16	중로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축소 -폭원:15m -연장:470m→43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2-10호선의 변경에 따라 접속되는 노선을 축소함
소로2-84	소로2-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연장 -폭원:8m -연장:481m→51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2-10호선의 변경에 따라 접속되는 노선을 연장함
소로2-85	소로2-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연장 -폭원:8m -연장:378m→449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2-10호선의 변경에 따라 접속되는 노선을 연장함
소로2-284	소로2-2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축소 -폭원:8m -연장:220m→216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2-10호선의 변경에 따라 접속되는 노선을 축소함
소로3-98	소로2-2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폭확장 및 노선명 변경 -폭원:6m→8m -연장:7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2-10호선의 변경에 따라 접속되는 노선의 폭원을 확장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확장된 폭원(8m)에 부합하는 소로2류로 노선명을 변경함
소로3-249	소로3-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형변경 -폭원:6m -연장:940m→1,06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개설 공사에 따라 지장물 저축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도로 선형을 유지하고자 기본설계를 반영하여 도로 선형을 변경함

거창군 공고 제2017-1059호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제정(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거창군수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 상위법령(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의 도로손괴자부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개정코자함.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완화하여 주민 편의 도모

2. 주요내용

- 「도로법」 제67조(손괴자 부담금)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의 손괴자 부담금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
-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내 ‘선납’에서 ‘공사 개시 전 납부’로 개정

3. 제정(개정·폐지) 조례(규칙)안: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건설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건설과
- 우편번호:51032, 전화: 055-940-3553, 팩스: 055-940-3529, 이메일: chansik@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일자	2017. 10. .
제 출 자	건설과장

1. 제안 이유

「도로법」의 도로손해자부담금이 삭제되어 조례의 근거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도로손해자 부담금 조항 삭제.(안 제3조)
- 나.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 납부로 규제 완화. (안 제3조)
- ※ 자치법규 일제 정비과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91조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09. 29 ~ 10. 18.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 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그 도로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 파손부분에 대한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드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산출할 때 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④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공사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3조(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군수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u>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해자부담금 조례</u></p> <p><u>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동법 제67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도로의 손해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 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u> <u>2. "직접손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u> <u>3. "간접손해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해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u> 	<p><u>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그 도로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② <u>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드는 비용만을 징수한다.</u></p> <p>③ <u>제2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산출할 때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 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 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u></p> <p>④ <u>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공사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3조 (원인자 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p>	<p>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p> <p>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p> <p>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p> <p>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p> <p>제3조(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군수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과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p> <p>3. 그 밖에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군수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3조 (원인자 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p>	<p>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의 비용 부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한다.</p> <p>②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드는 비용만을 징수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산출할 때 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u>제4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 손괴자 부담금) 도로를 손괴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다.</u></p>	<p><u><삭 제></u></p>	
<p><u>제5조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 징수한다.</u></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1. <u>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손케부분 및 간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간접 손케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u></p> <p>2. <u>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 산정기준은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은 "별표1" 직접손케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을 준용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u></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3. <u>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가까운 손괴로 도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복구가 요구되는 경우와 원인자의 사망등으로 선납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u></p>		

거창군 공고 제2017-1060호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제정(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거창군수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 개정 된 도로법 규정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전년도 납부한 점용료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 10%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조례에 반영

3. 제정(개정·폐지) 조례(규칙)안: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건설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건설과
- 우편번호:51032, 전화: 055-940-3553, 팩스: 055-940-3529, 이메일: chansik@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연월일	2017. 10. .
제 출 자	건설과장

1. 제안이유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조정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 개정(안 제5조)

○ 도로점용료의 부과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선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7. 9. 29. ~ '17. 10. 18.

2)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평가완료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2항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 감면은 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제1조(현행과 같음)
<p>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p>	제2조(현행과 같음)
<p><u>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u></p>	제3조(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p> <p>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u>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영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u></p>	<p>제4조(현행과 같음)</p> <p>제5조(점용료의 조정) ----- ----- ----- ----- <u>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 감면은 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른다.</p> <p>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현행과 같음)</p> <p>제7조(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5.>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거창군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0.

거 창 군 수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내구연한 경과한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른 기존 공인 폐기 및 신규 공인 등록
2. 등록 공인
 - 가. 등록 공인: 8점
 - 나. 최초 사용일: 2017. 10. 13.
3. 폐기 공인
 - 가. 폐기 공인: 8점
 - 나. 폐기 방법: 거창군 기록관(문서고) 이관

4. 등록 및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등 록	폐 기
민원사무 거창읍장인 전용 (통합민원발급기 1)	2.4cm×2.4cm		
민원사무 거창읍장인 전용 (통합민원발급기 2)	2.4cm×2.4cm		
민원사무 거창군수인 거창읍전용 (통합민원발급기 1)	3.0cm×3.0cm		
민원사무 거창군수인 거창읍전용 (통합민원발급기 2)	3.0cm×3.0cm		